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45 호

2005년 7월 29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69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70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71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72호(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1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73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1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74호(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2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75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2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76호(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 3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77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37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78호(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 40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79호(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4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80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51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498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499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00호(2005.1.1기준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토지가격조정결정·공시) 6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01호(2005.1.1기준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공시) 6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03호(수용재결신청물건열람공고(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공사(주차장부지))) .. 6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508호(2005년제2차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시행공고) 76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33호(2005년도추가경정예산고시) 78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34호(지적측량기준점재설치완료에따른성과고시) 8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6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 : 718명

3. 총 계 : 737명

제3조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현행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737	464	19	40	16	19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40	408	11	36	15	170
3급	1	1				
4급	5	3	1	1		
5급	41	16	2	5	1	17
<u>6급</u>	116	88	3	5	3	17
<u>7급</u>	186	131	5	7	4	39
<u>8급</u>	198	124		10	6	58
<u>9급</u>	93	45		8	1	39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1	1				
기능직 계	95	54	8	4	1	28
기능6급	3	3				
기능7급	5	4				1
기능8급	12	10	2			
기능9급	25	16	5	1		3
기능10급	50	21	1	3	1	24

□ 제안이유

-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지자체의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의 접근성 및 현장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집행기관 정원(안 제2조 제1호)
 - 709명 ⇒ 718명(9명 순증)
 - 일반직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 총계 정원 (안 제2조 제3호)
 - 728명 ⇒ 737명 (9명 순증)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7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서“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별표] 중

만수3동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0-2”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7-1”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관련 [별표3]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중 만수3동사무소 위치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0-2”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7-1”로 한다.

□ 제안이유

- 만수3동 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2조(소재지)의 [별표] 중 만수3동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0-2”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7-1”로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71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3조(요율)중 [별표1] (증명)중 6.기타제증명란에

“(2)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통 3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2)” 내지 “(3)”을“(3)” 내지 “(4)”로 한다.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중

“4.가정복지관계 (1) 사설묘지, 시설화장장 및 납골당허가필증
제교부 1매 500원” 및 “(2) 묘지개장 허가 1매 500원” 을 삭제한다.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등)제1항 제5호중 가목 “법인의 대표자 및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을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로, 다
목에 “기타”를 “그밖에”로 “비용의 감면이”를 “면제가”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중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중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칸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칸(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칸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삭제조항)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컷(1MB 기준)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	--

※ 행정절차법 제37조 및 제42조에 의거 청문관련서류 및 입법예고안 전문의 경우에는 열람을 제외하고 복사에 따른 수수료만 징수한다.(삭제조항)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신설)

■ 제안이유

- 2005.1.14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규칙이 (대통령령 제18677호, 건설교통부령 제425호)개정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 신설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2001.3.24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되면서 묘지개장 및 사설묘지허가 등 수수료 내용이 삭제되어 제증명 등 수수료 삭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2004. 7.29 대통령 제18493)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일부 개정

■ 주요내용**○ 제3조(요율)의 [별표1], [별표3] 일부개정**

- ⇒ [별표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 300원 (신설)
- ⇒ [별표1] 사설묘지, 시설화장장 및 납골당허가필증 재교부수수료, 묘지개장허가 수수료 삭제
- ⇒ [별표3] 정보공개수수료 일부 개정

○ 제8조(수수료의 면제등)의 수수료 면제내용 일부 개정

- ⇒ 비영리의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추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7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제10조 제3항중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5항중 간사는“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2005년 5월 2일자로 총무국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회계공무원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운용관 :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9조 제1항)
-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함.
(안 제10조 제3항)
-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함.(안 제10조 제4항)
- 간사는 “방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함.(안 제10조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77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과태료부과 기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의견제출)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에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독촉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 견 제 출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			시까지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 (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 | |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팀 전화 453-27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처분	기관명칭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신 청 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간		납부통지번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금액	원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 제18조,제21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6조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 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부과내역	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원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과태료처분내역 및 불복사유	과태료 처분사유			
	본인의 불복사유			

붙임: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끝.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별 표 】

■ 과태료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기준일:처분일, 재적발일)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18조 및 제26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 및 제26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규정(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절차의 규정(안제4조 -안 제6조)
- 강제징수 및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7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남동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1인과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코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안 제3조)
-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안 제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7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남동구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복지 관련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팀장, 의약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7조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할지역 안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임

□ 주요내용

- 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사항 규정(안 제2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대한 구성(안 제3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 공개(안 제4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 임기(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
-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위촉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조)
-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안 제13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76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중 융자된 융자금 등
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해 온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현행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349호)에 의한 전세자금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69호)에 의한 생업자금융자와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저하되었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 동 조례에 의한 기금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07181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재원으로 이입하여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77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사회복지법 제2조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를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장기고율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 예탁시 본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규정에 따른다.

□ 제안이유

- 현행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이자가 5%로 되어있으나,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21조(건설교통부훈령 제349호)에 의한 전세자금(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9조(보건복지부령 제269호) 관련 지침에 의한 생업자금(3%) 및 2005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지침에 자활공동체 사업대여자금이 3%로 되어있어,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운영상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자를 연 3%로 하향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에 따른 소관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으로 이입·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종전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한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를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로 함(안 제24조제3항)
-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예탁된 기금은 이자손실 최소화를 위해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함을 신설(안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78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
육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4조”를 “영유아보육법 제6조”로 하고, “보육위
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법 제7조의”를 “법제12조 및 제14조의”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20인 이내의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제1호, 제2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는 삭제
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5. 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3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제1항 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법 제15조의”를 “법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구성운영중인 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기능 등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가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의 심의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 위원 자격기준 일부 변경(안 제2조 제2항)
-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사항의 심의기능 추가 및 변경(안 제3조)
-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안 제4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79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0조 및 제16조중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 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
점·대형점·쇼핑센터, 도·소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하
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고 포상금은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에서 받은 금액으로 하여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업소의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금액 하향 조정(안 제10조 별표1)
- 1회용품 사용 대상품 완화 및 매장면적의 33㎡ 미만인 도소매 업소의 1회용봉투·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허용제외(안 제17조)
- 신고포상금지급 방법을 현금 외에 지역상품권 및 현금 지급 가능토록 함(안 제22조)
- 신고포상금의 월 지급 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하되 전국을 기준으로 함(안 제23조)

신 □ 구 조문 대비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개 정 전					현 행				
과 태 료					과 태 료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포상금액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현행과 같음]	10	30	50	3
(4)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현행과 같음]	5	10	30	2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	-	-	-	[현행과 같음]	-	-	-	-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현행과 같음]	10	30	50	3

개 정 전				현 행			
과 태 로		과 태 로		과 태 로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 배화점 ☐ 대형점 ☐ 쇼룸 ☐ 센터 ☐ 도소매 센터 ☐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을 무상으로 제공(환불등에 대 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 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되거나 침함된 1회용 광고선전 물을 제작 ☐ 배포한 때	300	300	30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를 ----- ----- ----- ----- -----	100	200	30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 ☐ 대형점 ☐ 쇼룸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 ☐ 판매 장소 를 설치 ☐ 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현행과 같음]	100	200	300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 ☐ 소 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 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 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 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침함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 작 ☐ 배포한 때	-	-	-	[현행과 같음]	-	-	-

개 정 전					현 행				
과 태 로		과 태 로			과 태 로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포상금액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현행과 같음]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현행과 같음]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현행과 같음]	5	10	30	2
[신 설]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3	5	10	-
바.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조리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	-	-	-	[현행과 같음]	-	-	-	-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7	[현행과 같음]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현행과 같음]	5	10	30	2

개 정 전					현 행				
과 태 로					과 태 로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01후)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01후)	포상금액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 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	-	-	[현행과 같음]	-	-	-	-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현행과 같음]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현행과 같음]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현행과 같음]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현행과 같음]	50	100	200	10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78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6조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외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동조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한다.

동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자 시설변경 등을 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의 지침이 시달되어, 지침의 내용에 맞게 본 조례의 “보조의 대상”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2조의2(보조의 대상)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6조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외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22조의2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한다.

○ 제22조의2 제2호를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신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4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공시송달 게재 방식을 개선·보완하여 구세부와 징수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공시송달 게재 방식에 인터넷 게재를 추가하여 관련 조문 변경(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8.15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453 - 2240, 2247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장

☐ 제안이유

-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공시송달 게재 방식을 개선·보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공시송달 게재 방식에 인터넷 게재를 추가하여 관련 조문 변경 (안 제17조)

☐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

” 별첨 ”

☐ 참고사항(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2002.12.30개정)
- 정부합동감사시 지방세분야 지적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공시송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고 인터넷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u>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u> 제17조(공시송달)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u>게재하는 것으로 한다.</u>	<u>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u> 제17조(공시송달)----- ----- ----- ---<u>게재하고 인터넷에도 게재하</u> <u>여야 한다.</u>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4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2005. 7. 1 인천항만공사 출범과 관련하여 항만공사의 설립·운영의 조기정착 및 공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3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안 제2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8.15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453 - 2240, 2247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년 7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05. 7. 1 인천항만공사 출범과 관련하여 항만공사의 설립·운영의 조기정착 및 공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3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안 제23조의2)

☐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내용

” 별첨 ”

☐ 참고사항(관련법규)

- 인천광역시자치군(구)세감면조례개정 허가 통보
→ 세정과-4290(05.4.11)
- 항만공사법 제8조
- 항만법 제2조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8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3조의2(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u>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500 호

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가격조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5. 7.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공시

- 대 상 토 지 : 95필지 (가격조정 토지) 【내역 별첨】
- 기 준 일 : 2005년 1월 1일
-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것인 바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032)453-2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의 가격조정 내역

(인천 남동구)

(단위:원/㎡)

연번	소재지	당 초 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정지가	비 고
1	구월동 203-18	534,000	453,000	453,000	453,000	하향조정
2	구월동 203-27	534,000	453,000	453,000	453,000	하향조정
3	구월동 580-6	181,000	176,000	176,000	176,000	하향조정
4	구월동 580-7	181,000	176,000	176,000	176,000	하향조정
5	구월동 580-12	181,000	176,000	176,000	176,000	하향조정
6	구월동 580-13	181,000	176,000	176,000	176,000	하향조정
7	구월동 688-36	843,000	635,000	635,000	635,000	하향조정
8	구월동 716	129,000	122,000	122,000	122,000	하향조정
9	구월동 793-1	125,000	115,000	115,000	115,000	하향조정
10	구월동 826-16	157,000	142,000	142,000	142,000	하향조정
11	구월동 827-2	157,000	142,000	142,000	142,000	하향조정
12	구월동 1128-3	2,410,000	2,530,000	2,530,000	2,530,000	상향조정
13	구월동 1174-1	1,370,000	1,300,000	1,300,000	1,300,000	하향조정
14	구월동 1268-12	920,000	874,000	874,000	874,000	하향조정
15	구월동 1345-13	892,000	850,000	850,000	850,000	하향조정
16	구월동 1383-5	593,000	613,000	613,000	613,000	상향조정
17	구월동 1475	4,71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상향조정
18	간석동 225-200	492,000	507,000	507,000	507,000	상향조정
19	간석동 383-4	1,120,000	1,030,000	1,030,000	1,030,000	하향조정
20	간석동 383-6	1,360,000	1,260,000	1,260,000	1,260,000	하향조정
21	간석동 383-10	1,440,000	1,310,000	1,310,000	1,310,000	하향조정
22	간석동 383-11	1,440,000	1,310,000	1,310,000	1,310,000	하향조정
23	간석동 901-56	1,460,000	585,000	585,000	585,000	하향조정
24	만수동 2-2	517,000	515,000	515,000	515,000	하향조정
25	만수동 2-4	36,200	33,700	33,700	33,700	하향조정
26	만수동 2-19	166,000	126,000	126,000	126,000	하향조정
27	만수동 2-48	525,000	488,000	488,000	488,000	하향조정
28	만수동 367-2	1,330,000	1,140,000	1,140,000	1,140,000	하향조정
29	만수동 367-3	1,330,000	1,140,000	1,140,000	1,140,000	하향조정
30	만수동 747-1	78,400	72,100	72,100	72,100	하향조정
31	만수동 747-2	70,700	65,000	65,000	65,000	하향조정
32	만수동 751	70,700	65,000	65,000	65,000	하향조정

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의 가격조정 내역

(인천 남동구)

(단위:원/㎡)

연번	소재지	당 초 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정지가	비 고
33	만수동 1024-1	1,050,000	978,000	978,000	978,000	하향조정
34	만수동 1088-16	1,030,000	996,000	996,000	996,000	하향조정
35	만수동 산32-3	11,600	6,790	6,790	6,790	하향조정
36	장수동 41-1	86,400	77,500	77,500	77,500	하향조정
37	장수동 41-4	83,700	77,500	77,500	77,500	하향조정
38	장수동 42-1	442,000	437,000	437,000	437,000	하향조정
39	장수동 42-5	442,000	437,000	437,000	437,000	하향조정
40	장수동 42-6	442,000	437,000	437,000	437,000	하향조정
41	장수동 43	464,000	450,000	450,000	450,000	하향조정
42	장수동 44-1	90,700	87,900	87,900	87,900	하향조정
43	장수동 45-3	108,000	104,000	104,000	104,000	하향조정
44	장수동 46-6	120,000	116,000	116,000	116,000	하향조정
45	장수동 47-1	544,000	528,000	528,000	528,000	하향조정
46	장수동 52-2	475,000	465,000	465,000	465,000	하향조정
47	장수동 53	475,000	465,000	465,000	465,000	하향조정
48	장수동 54	451,000	442,000	442,000	442,000	하향조정
49	장수동 65	480,000	475,000	475,000	475,000	하향조정
50	장수동 69	475,000	470,000	470,000	470,000	하향조정
51	장수동 72	475,000	465,000	465,000	465,000	하향조정
52	장수동 104-5	80,000	79,200	79,200	79,200	하향조정
53	장수동 117-1	84,000	81,400	81,400	81,400	하향조정
54	장수동 117-2	84,000	81,400	81,400	81,400	하향조정
55	장수동 122-2	465,000	456,000	456,000	456,000	하향조정
56	장수동 140-2	84,000	81,400	81,400	81,400	하향조정
57	장수동 145-2	86,400	79,200	79,200	79,200	하향조정
58	장수동 649-8	199,000	59,400	59,400	59,400	하향조정
59	서창동 221-4	99,400	98,400	98,400	98,400	하향조정
60	서창동 302-2	93,400	89,100	89,100	89,100	하향조정
61	서창동 414	53,800	56,300	56,300	56,300	상향조정
62	서창동 500-32	64,400	70,300	70,300	70,300	상향조정
63	서창동 산18-1	34,200	33,500	33,500	33,500	하향조정
64	서창동 15BL-3BL	1,390,000	755,000	755,000	755,000	하향조정

200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의 가격조정 내역

(인천 남동구)

(단위:원/㎡)

연번	소재지	당 초 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정지가	비 고
65	운연동 6-8	238,000	150,000	150,000	150,000	하향조정
66	운연동 47	500,000	475,000	475,000	475,000	하향조정
67	운연동 47-1	299,000	202,000	202,000	202,000	하향조정
68	운연동 260-3	354,000	343,000	343,000	343,000	하향조정
69	운연동 산62-1	29,100	25,700	25,700	25,700	하향조정
70	남촌동 30	441,000	426,000	426,000	426,000	하향조정
71	남촌동 466-3	130,000	128,000	128,000	128,000	하향조정
72	수산동 42-5	121,000	115,000	115,000	115,000	하향조정
73	수산동 60-1	131,000	125,000	125,000	125,000	하향조정
74	수산동 355	106,000	101,000	101,000	101,000	하향조정
75	수산동 540-3	456,000	192,000	192,000	192,000	하향조정
76	수산동 산21-1	39,900	38,700	38,700	38,700	하향조정
77	수산동 산39-1	34,400	33,400	33,400	33,400	하향조정
78	도림동 28-4	36,300	133,000	133,000	133,000	상향조정
79	도림동 30-12	36,300	120,000	120,000	120,000	상향조정
80	도림동 31-10	130,000	39,600	39,600	39,600	하향조정
81	도림동 31-15	102,000	115,000	115,000	115,000	상향조정
82	도림동 139-2	90,000	29,700	29,700	29,700	하향조정
83	도림동 155-12	90,400	85,800	85,800	85,800	하향조정
84	도림동 347-9	665,000	637,000	637,000	637,000	하향조정
85	도림동 산37-1	64,100	62,800	62,800	62,800	하향조정
86	논현동 38-4	479,000	475,000	475,000	475,000	하향조정
87	논현동 38-5	479,000	460,000	460,000	460,000	하향조정
88	논현동 68-54	554,000	459,000	459,000	459,000	하향조정
89	논현동 68-55	584,000	459,000	459,000	459,000	하향조정
90	논현동 68-61	712,000	580,000	580,000	580,000	하향조정
91	고잔동 296-8	425,000	408,000	408,000	408,000	하향조정
92	고잔동 296-11	437,000	411,000	411,000	411,000	하향조정
93	고잔동 296-12	515,000	483,000	483,000	483,000	하향조정
94	고잔동 324	515,000	510,000	510,000	510,000	하향조정
95	고잔동 368-1	588,000	555,000	555,000	555,000	하향조정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501 호

200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합니다.

2005. 7.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결정·공시

- 대 상 토 지 : 도림동 576-2
- 정 정 년 도 : 2005년 1월 1일기준
-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내역 별첨】

■ 이의신청

- 기 간 : 2005. 8. 1 ~ 2005. 8. 30(30일)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 방 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32)453-2723]

2005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내역(단위:원/m²)

토지소재지	당초지가	정정지가	비 고
도림동 576-2	66,000	222,00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 - 503호

수용재결신청물건열람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공사(주차장부지)”에 편입되는 지장물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7.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공사(주차장부지)
3. 사업의 규모 : A=29,800m²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번지 일원
5. 열 략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6. 열 략 기 간 : 2005. 7. 29 - 8. 11
7. 기 타 사 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자제시액조서 (지장물)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주차장부지조성사업

지장물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감정평가액			보상액	소유자	
	동명	지번				중앙감정	제일감정	신술평가		성명	주소
4	노현동	111번지 일련	여망수리장	석파이프.베널	249.20	5,482,400	4,984,000	5,233,200	5,233,200	김경운	
			창고	석파이프.베널	24.15	289,800	241,500	265,650	265,650		
			탈의실	조형식판넬	11.56	1,734,000	1,387,200	1,560,600	1,560,600		
			창고	철판	14.26	499,100	427,800	463,450	463,450		
			계					7,522,900	7,522,900		
4-1	노현동	111번지 일련	창고	탐차 컨테이너	8.6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김경운	
			계					100,000	100,000		
4-2	노현동	111번지 일련	창고	탐차 컨테이너	8.6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김경운	
			계					100,000	100,000		
5	노현동	111번지 일련	여망수리장	석파이프.베널	191.52	4,213,440	3,830,400	4,021,920	4,021,920	김춘실	
			창고	석파이프.베널	21.12	464,640	422,400	443,520	443,520		
			창고	석파이프.현막	30.07	1,804,200	1,503,500	1,653,850	1,653,850		
			창고	목조	4.48	100,000	95,000	97,500	97,500		
			변소	목조	0.77	400,000	400,000	400,000	400,000		
			계					6,616,790	6,616,790		
5-1	노현동	111번지 일련	사무실	컨테이너	18.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김춘실	
			계					200,000	200,000		
6	노현동	111번지 일련	주박	목조.스레트	56.95	23,919,000	21,641,000	22,780,000	22,780,000	김두환	
			주박	목조	1식	2,847,500	2,847,500	2,847,500	2,847,500		
			경향조	5인용	1식	건물에포함평가	건물에포함평가	건물에포함평가			
			창고	철골.현막	64.35	9,852,500	8,365,500	9,009,000	9,009,000		
			냉동창고	2.5×5	1식	4,000,000	4,500,000	4,250,000	4,250,000		
			제빙기		2대	-	-	-	-		
			관정	철골현막	1식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지장번호	소재지		불전의종류	구 조	면적(㎡)	감정평가액			보상액	소유자	
	동명	지번				중앙감정	제일감정	산술평균		성명	주소
7	논현동	111번지 일원	계	석파이프, 베널	72.00	2,880,000	2,520,000	39,686,500	39,686,500		
			계					2,700,000	2,700,000	이용재	
8	논현동	111번지 일원	공 장	석파이프, 견막	25.37	1,522,200	1,268,500	1,395,350	1,395,350	조건철	
			사무실	컨테이너	11.70	120,000	100,000	110,000	110,000		
			선 반	10'외일체	1식	1,700,000	1,500,000	1,600,000	1,600,000		
			계					3,105,350	3,105,350		
9	논현동	111번지 일원	건 사	석파이프, 목조	17.09	375,980	341,800	358,890	358,890	이철호	
			창 고	석파이프, 견막	36.60	1,647,000	1,464,000	1,555,500	1,555,500		
			계					1,914,390	1,914,390		
9-1	논현동	111번지 일원	냉동창고	합차 컨테이너	4.86	100,000	80,000	90,000	90,000	이철호	
			계					90,000	90,000		
10	논현동	111번지 일원	여망수리장	석파이프, 베널	215.40	7,539,000	6,462,000	7,000,500	7,000,500	이재영	
			창 고	석파이프, 견막	34.08	2,044,800	1,704,000	1,874,400	1,874,400		
			창 고	목 조, 스키프	32.19	1,448,550	1,287,600	1,368,075	1,368,075		
			주 방	석파이프, 견막	10.20	459,000	408,000	433,500	433,500		
			탈의실	컨테이너	15.00	170,000	150,000	160,000	160,000		
			창 고	석파이프, 목조	19.47	876,150	778,800	827,475	827,475		
			변 소	석파이프, 목조	3.20	500,000	450,000	475,000	475,000		
			변 소	F.R.P	0.9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담 장	황석(26.9m)	1식	538,000	538,000	538,000	538,000		
			계					12,826,950	12,826,950		
30	논현동	111번지 일원	창 고	석파이프, 견막	75.36	4,521,600	3,768,000	4,144,800	4,144,800	김현택	
			보일러실	목 조	3.64	1,2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주 력	컨테이너	18.00	600,000	500,000	550,000	550,000		
			사무실	컨테이너	18.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건 사	철 조	3.00	30,000	30,000	30,000	30,000		

지장번호	소재지		불지의종류	구조	면적(㎡)	감정평가액			보상액	소유자	
	동명	지번				종합감정	제일감정	산술평균		성명	주소
			건사	철조	3.00	30,000	30,000	30,000	30,000		
			건사	철조	3.00	30,000	30,000	30,000	30,000		
			철조문	B=3.6m	1식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당장	항석(5.5m)	1식	110,000	110,000	110,000	110,000		
			계					6,394,800	6,394,800		
30-1	노현동	111번지 일면	건사	철조	14.70	323,400	294,000	308,700	308,700	김현택	
			건사	철조	3.00	30,000	30,000	30,000	30,000		
			건사	철조	3.00	30,000	30,000	30,000	30,000		
			건사	철조	6.50	60,000	60,000	60,000	60,000		
			건사	철조	6.15	60,000	60,000	60,000	60,000		
			건사	블럭, 목조	31.92	1,436,400	1,276,800	1,356,600	1,356,600		
			건사	철재, 항석	20.93	460,460	418,600	439,530	439,530		
			창고	목조, 항석	20.42	918,900	816,800	867,850	867,850		
			건사	철재, 목조	20.60	453,200	412,000	432,600	432,600		
			건사	철재, 스테이트	2.88	30,000	30,000	30,000	30,000		
			건사	목조, 항석	10.92	491,400	436,800	464,100	464,100		
			철조문	B=1.2m	1식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당장	항석(9.5m)	1식	190,000	190,000	190,000	190,000		
			계					4,369,380	4,369,380		
30-2	노현동	111번지 일면	건사	철재, 조림식판넬	11.52	806,400	691,200	748,800	748,800	김현택	
			사무실	칸테이너	18.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건사	철재, 조림식판넬	2.88	30,000	30,000	30,000	30,000		
			건사	철재, 조림식판넬	17.28	1,209,600	1,036,800	1,123,200	1,123,200		
			건사	철재, 조림식판넬	25.92	1,814,400	1,555,200	1,684,800	1,684,800		
			당장	항석(33.2m)	1식	660,000	660,000	660,000	660,000		
			계					4,446,800	4,446,800		
31	노현동	111번지 일면	건사	목조	30.57	1,069,950	917,100	993,525	993,525	전영일	

지장번호	소재지		불전의종류	구조	면적(㎡)	감정평가액			보상액	소유자	
	동명	지번				중량감정	제일감정	산술평균		성명	주소
			건사	철조	46.80	3,276,000	2,808,000	3,042,000	3,042,000		
			문	조림식판널(B=1.2m)	1식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당장	조림식판널(6.2m)	1식	186,000	186,000	186,000	186,000		
			당장	목조(12.6m)	1식	189,000	189,000	189,000	189,000		
			바다	콘크리트	1식	500,000	450,000	475,000	475,000		
			창고	경량철골조	42.90	6,864,000	6,435,000	6,649,500	6,649,500		
			계					11,685,025	11,685,025		
32	논현동	111번지 일원	주막	컨테이너	27.00	900,000	800,000	850,000	850,000	최기홍	
			변소	F.R.P	0.9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주막	컨테이너	18.00	600,000	500,000	550,000	550,000		
			건사	섬파이프.목조	5.1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문	항석(B=1.8m)	1식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당장	항석(6.6m)	1식	132,000	132,000	132,000	132,000		
			화장실		1식	600,000	500,000	550,000	550,000		
			바다	콘크리트	1식	1,2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가추	샌드위치판널	10.00	1,100,000	1,000,000	1,050,000	1,050,000		
			계					4,682,000	4,682,000		
36	논현동	111번지 일원	여망수리장	섬파이프.베널	57.24	1,831,680	1,602,720	1,717,200	1,717,200	이창선	
			계					1,717,200	1,717,200		
40	논현동	111번지 일원	창고	섬파이프.베널	66.08	1,718,080	1,585,920	1,652,000	1,652,000	민광식	
			계					1,652,000	1,652,000		
42	논현동	111번지 일원	주막	목조.스케트	53.30	15,990,000	14,924,000	15,457,000	15,457,000	도숙희	
			세면장	목조	4.8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창고	목조	1.68	30,000	30,000	30,000	30,000		
			목조문	B=1.3m	1식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담장	목조(15.5m)	1식	232,000	232,000	232,000	232,000		
			건사	목조	1식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지정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감정평가액			보상액	소유자	
	동명	지번				중앙감정	제일감정	산술평균		성명	주소
			계					16,169,000	16,169,000		
47	노현동	111번지 일련	창고	타차 컨테이너	4.76	100,000	80,000	90,000	90,000	강운영	
			계					90,000	90,000		
52	노현동	111번지 일련	어망수리장	쇠파이프,베널	55.00	1,760,000	1,540,000	1,650,000	1,650,000	최병욱,이희용	
			계					1,650,000	1,650,000		
54	노현동	111번지 일련	창고	쇠파이프,천막	23.20	1,160,000	1,044,000	1,102,000	1,102,000	민병건	
			관정		1식	800,000	800,000	800,000	800,000		
			물탱크	FRP(D=2.2m)	식	70,000	70,000	70,000	70,000		
			계					1,972,000	1,972,000		
60	노현동	111번지 일련	창고	철골, 천막	13.26	928,200	795,600	861,900	861,900	최인성	
			냉동창고	조림식판넬	6.21	1,100,000	1,000,000	1,050,000	1,050,000		
			냉동창고	조림식판넬	6.30	1,100,000	1,000,000	1,050,000	1,050,000		
			계					2,961,900	2,961,900		
61	노현동	111번지 일련	냉동창고	철골,조림식판넬	33.60	8,000,000	7,500,000	7,750,000	7,750,000	송수인	
			계					7,750,000	7,750,000		
63	노현동	111번지 일련	주막	목조,스케트	23.10	9,702,000	8,778,000	9,240,000	9,240,000	김두환	
			정화조		1식	건물에포함평가	건물에포함평가				
			계					9,240,000	9,240,000		
66	노현동	111번지 일련	주막	목조,스케트	93.06	27,918,000	26,056,800	26,987,400	26,987,400	김춘실	
			계					26,987,400	26,987,400		
66-1	노현동	111번지 일련	창고	목조,스케트	15.60	702,000	624,000	663,000	663,000	김춘실	
			변소	목조,스케트	1.21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담장	스케트(7.7m)	1식	140,000	140,000	140,000	140,000		
			담장	목조(11.2m)	1식	168,000	168,000	168,000	168,000		
			계					1,371,000	1,371,000		
68	노현동	111번지 일련	주막	목조,스케트	85.80	25,740,000	24,882,000	25,311,000	25,311,000	남궁은자	
			보일러실	목조, 항석	1.62	50,000	50,000	50,000	50,000		

지장물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면적(㎡)	감정평가액			보상액	소유자	
	동명	지번				중앙감정	제일감정	산술평균		성명	주소
			창고	목조	7.76	-	-	-	-		
			건사	목조	7.16	250,600	214,800	232,700	232,700		
			변소	목조,스케트	1.2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물탱크	FAP(D=2.5m)	1식	50,000	50,000	50,000	50,000		
			계					26,043,700	26,043,700		
69	논현동	111번지 일원	주택	목조,항석	22.68	7,938,000	7,711,200	7,824,600	7,824,600	신동인	
			주택	조립식판넬,항석	11.25	3,937,500	3,825,000	3,881,250	3,881,250		
			창고	타차 컨테이너	2.88	60,000	60,000	60,000	60,000		
			변소	목조	0.81	400,000	400,000	400,000	400,000		
			항석문	B=2.6m	1식	200,000	180,000	190,000	190,000		
			담장	항석(36.6m)	1식	732,000	732,000	732,000	732,000		
			계					13,087,850	13,087,850		
70	논현동	111번지 일원	주택	목조,스케트	66.05	15,852,000	14,531,000	15,191,500	15,191,500	이경진	
			변소	F.R.P	0.9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계					15,341,500	15,341,500		
71	논현동	111번지 일원	주택	조립식판넬	44.06	15,421,000	15,421,000	15,421,000	15,421,000	전영일	
			보일러실	목조,라이트	12.33	431,550	389,900	400,725	400,725		
			주택	목조	4.64	696,000	649,600	672,800	672,800		
			창고	컨테이너	18.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계					16,694,525	16,694,525		
72	논현동	111번지 일원	창고	항석,스케트	70.47	8,456,400	7,047,000	7,751,700	7,751,700	배원해	
			방동창고	조립식판넬	17.40	-	-	-	-		
			계					7,751,700	7,751,700		
73	논현동	111번지 일원	여왕수리장	쉬파이프,비닐	124.20	3,974,400	3,477,600	3,726,000	3,726,000	김계순	
			계					3,726,000	3,726,000		
74	논현동	111번지 일원	주택	조립식판넬,항석	50.84	18,302,400	18,302,400	18,302,400	18,302,400	전정욱	
			주택	목조,조립식판넬	14.76	2,952,000	2,952,000	2,952,000	2,952,000		

지장물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면적(㎡)	감정평가액			보상액		소유자	
	동명	지번				중앙감정	제일감정	산술평균			성명	주소
75	논현동	111번지 일원	계					21,254,400	21,254,400			
			주 택	조립식판넬.항석	50.63	18,226,800	18,226,800	18,226,800	18,226,800		김계순	
			보일러설	조립식판넬.항석	6.10	732,000	671,000	701,500	701,500			
			주 택	목조.조립식판넬	18.14	3,628,000	3,628,000	3,628,000	3,628,000			
			냉동창고	조립식판넬	17.40	3,500,000	3,000,000	3,250,000	3,250,000			
			계					25,806,300	25,806,300			
76	논현동	111번지 일원	주 택	조립식판넬	34.52	12,082,000	11,736,800	11,909,400	11,909,400		권영남	
			창고	쉬파이프.항석	46.02	7,363,200	6,903,000	7,133,100	7,133,100			
			건사	철조	32.80	721,600	656,000	688,800	688,800			
			건사	철조	44.59	980,980	891,800	936,390	936,390			
			물로	목조.비닐	24.45	293,400	244,500	268,950	268,950			
			계사	철조	16.72	367,840	334,400	351,120	351,120			
			계사	철조	7.88	173,360	157,600	165,480	165,480			
			물탱크	FAP(D=1.4m)	1식	40,000	40,000	40,000	40,000			
			개		19두	600,000	600,000	600,000	600,000			
			토끼		2두	-	-	-	-			
			계					22,093,240	22,093,240			
76-1	논현동	111번지 일원	건사	철조	14.64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전영남	
			계					300,000	300,000			
			합		계			330,100,600	330,100,60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508 호

2005년 제2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관내 사회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7. 2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가. 신청자격 : 구단위 사회단체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남동구 관내 사회단체
-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과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남동구 관내 사회단체

나. 제외단체

-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중앙정부, 인천광역시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
- (2)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3)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4) 모(母)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子)단체

2. 사업추진기간 : 2005년 9월 ~ 12월

3. 지원대상사업

- ① 국민화합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지역갈등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등)
- ② 문화시민운동 (예시 : Clean남동운동, 친절·질서·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등)
- ③ 투명사회만들기 (예시 : 부정부패추방, 부정불량식품·교통·환경사범 척결운동 등)
- ④ 자원봉사 (예시 : 이웃사랑나누기, 남동사랑운동, 자원봉사기반구축, 자원봉사연대 등)
- ⑤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예시 : 소외계층보호, 여성인력개발, 모성·아동·청소년보호 등)
-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숨은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 ⑦ 안전관리·재난구조 (예시 : 안전문화운동, 재해재난방재, 구조봉사활동 등)
- ⑧ 문화·예술·체육 : (예시 : 향토사연구, 학술, 체육진흥, 연극, 무용행사 등)
- ⑨ 구민참여확대 (예시 : 민·관 파트너십 개발, 주민자치참여 등)
- ⑩ 기타 구 권장사업으로 구정에 적극 부합하는 사업

※ 제외대상사업

- 보조금 없이 수행이 가능한 사업
- 불요불급한 1회성·소모성행사, 국내·외 여행 경비 등

4. 제출서류

- 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2부
- 나. 단체 자기소개서 2부
- 다. 지원사업계획서 2부
- 라. 신청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 마. 신청단체의 회원명단

5.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 가.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7. 29(금) ~ 8. 10(수) 13일간 근무 시간내
- 나.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남동구
 - 교부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단체관리 해당부서 또는 총무과
 - ※ 신청서류는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www.namdong.go.kr)
 - 상담전화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총무과 (453-2160)
- 다. 접수방법 : 직접접수

6. 지원사업 선정방법

- 가.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나.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 ※ 기지원단체는 1차 심의시 심의에서 제외된 사업 및 신규사업(9월~12월), 신규 신청단체는 9월~12월 사업분에 대하여 심의
- 다. 신청단체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선정에서 배제
- 라. 심사결과 통보 :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심사 결정 후 단체에서 교부 신청에 따라 지원
- 나.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다. 사업완료시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

8.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

※ 참고사항

- 0 사업신청시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참조.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05 - 33 호

2005년도 예 산 고 시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20일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2005년 제1회 일반및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2005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	비 고
합 계		174,921,915	164,187,400	10,734,515	6.5	
일반회계		153,546,291	140,508,695	13,037,596	9.3	
특별회계		21,375,624	23,678,705	△2,303,081	△9.7	
	의료급여기금	144,620	104,381	40,239	38.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962,000	1,948,000	14,000	0.7	
	주 차 장	6,332,779	11,609,099	△5,276,320	△45.4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4,144,405	1,225,405	2,919,000	238.2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047,916	3,047,916	0	0.0	
	만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1,243,904	1,243,904	0	0.0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4,500,000	4,500,000	0	0.0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153,546,291	100	140,508,695	100	13,037,596	9.3
세 입	지방세수입	28,000,751	18.2	28,000,751	19.9	0	0.0
	세 외 수 입	41,015,665	26.7	31,677,184	22.5	9,338,481	29.5
	경상적세외수입	17,738,904	11.6	17,504,148	12.5	234,756	1.4
	임시적세외수입	23,276,761	15.2	14,173,036	10.1	9,103,725	64.3
	지방교부세	2,372,615	1.5	0	0.0	2,372,615	
	조정교부금	38,193,783	24.9	36,500,000	26.0	1,693,783	4.7
	보 조 금	42,463,477	27.7	44,330,760	31.6	△1,867,283	△4.2
	국고보조금	24,354,147	15.9	24,284,924	17.3	69,223	0.3
	시도비보조금	18,109,330	11.8	20,045,836	14.3	△1,936,506	△9.6
	지 방 채	1,500,000	1.0	0	0.0	1,500,000	
	국내차입금	1,500,000	1.0	0	0.0	1,500,000	
세 출	경 상 예 산	56,814,656	37.0	53,768,333	38.3	3,046,323	5.7
	인건비	36,818,407	24.0	34,932,652	24.9	1,885,755	5.4
	경상적경비	19,996,249	13.0	18,835,681	13.4	1,160,568	6.2
	사 업 예 산	91,978,348	59.9	82,812,315	58.9	9,166,033	11.1
	보조사업	58,045,463	37.8	55,641,639	39.6	2,403,824	4.4
	자체사업	33,932,885	22.1	27,170,676	19.3	6,762,209	24.9
	채 무 상 환	139,469	0.1	139,469	0.1	0	0.0
	지방채상환	139,469	0.1	139,469	0.1	0	0.0
	예 비 비 등	4,613,818	3.0	3,788,578	2.7	825,240	21.8
	예비비	3,111,862	2.0	2,063,352	1.5	1,048,510	50.9
	기타	1,501,956	1.0	1,725,226	1.2	△223,270	△12.9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53,546,291	100	140,508,695	100	13,037,596	9.3
성 질 별	인 건 비	38,073,776	24.8	36,040,852	25.7	2,032,924	5.6
	물 건 비	12,816,998	8.3	11,698,279	8.3	1,118,719	9.6
	이전경비	61,793,924	40.2	58,479,121	41.6	3,314,803	5.7
	자본지출	36,382,775	23.7	30,636,865	21.8	5,745,910	18.8
	융자및출자	0	0.0	0	0.0	0	
	보전재원	130,000	0.1	130,000	0.1	0	0.0
	내부거래	460,226	0.3	460,226	0.3	0	0.0
	예비비및기타	3,888,592	2.5	3,063,352	2.2	825,240	26.9
기 능 별	일반행정비	51,688,288	33.7	46,699,542	33.2	4,988,746	10.7
	사회개발비	82,200,138	53.5	77,965,190	55.5	4,234,948	5.4
	경제개발비	15,166,066	9.9	12,224,054	8.7	2,942,012	24.1
	민방위비	463,738	0.3	417,088	0.3	46,650	11.2
	지원및기타경비	4,028,061	2.6	3,202,821	2.3	825,240	25.8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1,375,624	100	23,678,705	100	△2,303,081	△9.7
세 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 외 수 입	20,348,811	95.2	15,458,290	65.3	4,890,521	31.7
	경상적세외수입	7,498,723	35.1	7,498,723	31.7	0	0.0
	임시적세외수입	12,850,088	60.1	7,959,567	33.6	4,890,521	61.5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 조 금	1,026,813	4.8	8,220,415	34.7	△7,193,602	△87.5
	국고보조금	13,004	0.1	0	0.0	13,004	
	시도비보조금	1,013,809	4.7	8,220,415	34.7	△7,206,606	△87.6
세 출	경 상 예 산	637,059	3.0	631,179	2.7	5,880	1.0
	인건비	125,594	0.6	124,874	0.5	720	0.6
	경상적경비	511,465	2.4	506,305	2.1	5,160	1.1
	사 업 예 산	17,105,120	80.0	20,654,249	87.2	△3,549,129	△17.1
	보조사업	1,393,263	6.5	8,619,365	36.4	△7,226,102	△83.8
	자체사업	15,711,857	73.5	12,034,884	50.8	3,676,973	30.6
	채 무 상 환	0	0.0	0	0.0	0	0.0
	지방채상환	0	0.0	0	0.0	0	0.0
	예 비 비 등	3,633,445	17.0	2,393,277	10.1	1,240,168	51.9
	예비비	2,016,857	9.4	1,102,457	4.7	914,400	83.0
	기타	1,616,588	7.6	1,290,820	5.5	325,768	25.3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1,375,624	100	23,678,705	100	△2,303,081	△9.7
성 질 별	인 건 비	254,009	1.2	292,070	1.2	△38,061	△13.0
	물 건 비	2,660,313	12.4	2,109,124	8.9	551,189	26.1
	이전경비	407,350	1.9	407,350	1.7	0	0.0
	자본지출	12,458,507	58.3	16,528,884	69.8	△4,070,377	△24.6
	융자및출자	1,962,000	9.2	1,948,000	8.2	14,000	△2.9
	보전재원	0	0.0	0	0.0	0	0.0
	내부거래	0	0.0	0	0.0	0	0.0
	예비비및기타	3,633,445	17.0	2,393,277	10.1	1,240,168	△50.8
기 능 별	일반행정비	0	0.0	0	0.0	0	0.0
	사회개발비	11,718,164	54.8	9,954,639	42.0	1,763,525	17.7
	경제개발비	6,328,076	29.6	11,330,789	47.9	△5,002,713	△1.2
	민방위비	0	0.0	0	0.0	0	0.0
	지원및기타경비	3,329,384	15.6	2,393,277	10.1	936,107	△53.2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5-34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29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중회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m)	Y(m)		경도(L)	위도(B)
	별		침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가리원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측 량 연 월 일	2005. 7. 20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재설치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대장

일련번호	기준점명칭	기준점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설치일자	표지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1	도근점	499	438950.62	172934.28	2005.7.20	철재	구월동 1103	
2	도근점	504	438939.24	173082.63	2005.7.20	철재	구월동 1098-16	
3	도근점	516	438917.19	173389.32	2005.7.20	철재	구월동 1111-11	
4	도근점	524	438800.45	173376.17	2005.7.20	철재	구월동 1112	
5	도근점	528	439051.36	173543.76	2005.7.20	철재	구월동 1131	
6	도근점	532	439511.95	173089.42	2005.7.20	철재	간석동 900-36	
7	도근점	533	439589.62	173099.99	2005.7.20	철재	간석동 900-28	
8	도근점	538	439511.7	172919.64	2005.7.20	철재	간석동 901	
9	도근점	546	439160.77	173024.29	2005.7.20	철재	구월동 1088-17	
10	도근점	550	439417.68	172988.14	2005.7.20	철재	간석동 901-28	
11	도근점	553	439428.55	172909.96	2005.7.20	철재	간석동 901-3	
12	도근점	555	439500.85	173013.63	2005.7.20	철재	간석동 901-37	
13	도근점	565	439356.77	172900.08	2005.7.20	철재	간석동 902-9	
14	도근점	579	439056.51	173091.42	2005.7.20	철재	구월동 1100-34	
15	도근점	619	439020.38	174122.27	2005.7.20	철재	구월동 1199	
16	도근점	656	438229.57	174025.98	2005.7.20	철재	구월동 1185-5	
17	도근점	657	438225.59	174052.76	2005.7.20	철재	구월동 1184	
18	도근점	676	438252.71	174202.73	2005.7.20	철재	구월동 1187-5	
19	도근점	677	438209.66	174186.71	2005.7.20	철재	구월동 1184-6	
20	도근점	680	438084.1	174084.85	2005.7.20	철재	구월동 1181-15	

일련번호	기준점명칭	기준점번호	평면직각중점선수치		설치일자	표지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21	도근점	702	437984.52	173736.31	2005.7.20	철재	구월동 1474-3	
22	도근점	710	438432.9	173885.46	2005.7.20	철재	구월동 1153-3	
23	도근점	711	438385.98	173879.6	2005.7.20	철재	구월동 1154-7	
24	도근점	719	438938.2	174106.59	2005.7.20	철재	구월동 1199-13	
25	도근점	731	439168.21	173531.45	2005.7.20	철재	구월동 1134	
26	도근점	733	438636.6	174188.66	2005.7.20	철재	구월동 138-42	
27	도근점	735	438626.18	174332.48	2005.7.20	철재	구월동 279-3	
28	도근점	736	438613.51	174510.6	2005.7.20	철재	구월동 285	
29	도근점	810	438508.6	174899.17	2005.7.20	철재	구월동 1232	
30	도근점	812	438586.12	174904.83	2005.7.20	철재	구월동 234-1	
31	도근점	814	438605.81	174632.77	2005.7.20	철재	구월동 290	
32	도근점	816	438545.01	175072.87	2005.7.20	철재	구월동 1286-10	
33	도근점	864	438832.44	175705.84	2005.7.20	철재	구월동 928	
34	도근점	880	438546.52	175462.73	2005.7.20	철재	구월동 1294-13	
35	도근점	882	438516.77	175457.26	2005.7.20	철재	구월동 1293-10	
36	도근점	886	439199.62	175156.94	2005.7.20	철재	구월동 1264-86	
37	도근점	890	439094.42	175296.86	2005.7.20	철재	구월동 1263-3	
38	도근점	892	438979.62	175287	2005.7.20	철재	구월동 1270-6	
39	도근점	894	438982.32	175237.38	2005.7.20	철재	구월동 1270	
40	도근점	899	439096.53	175148.3	2005.7.20	철재	구월동 1264-17	
41	도근점	921	438951.87	176465.85	2005.7.20	철재	만수동 963-7	
42	도근점	922	438935.75	176509.33	2005.7.20	철재	만수동 961-12	

일련번호	기준점명칭	기준점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		설치일자	표지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43	도근점	923	438978.94	176526.89	2005.7.20	철재	만수동 963-13	
44	도근점	928	438910.71	176449.21	2005.7.20	철재	만수동 964-4	
45	도근점	929	438867.47	176432.1	2005.7.20	철재	만수동 965-8	
46	도근점	930	438849.74	176473	2005.7.20	철재	만수동 961-20	
47	도근점	935	438680.33	176206.48	2005.7.20	철재	만수동 967-8	
48	도근점	1029	439138.15	175476.25	2005.7.20	철재	구월동 1259-5	
49	도근점	1030	439179.24	175428.37	2005.7.20	철재	구월동 1258-10	
50	도근점	1032	439182.96	175376.09	2005.7.20	철재	구월동 1258-6	
51	도근점	1033	439230.69	175380.25	2005.7.20	철재	구월동 1258-1	
52	도근점	1035	439248.8	175160.7	2005.7.20	철재	구월동 1264-12	
53	도근점	1057	439295.33	175163.83	2005.7.20	철재	구월동 1264-1	
54	도근점	1060	439181.56	176322.55	2005.7.20	철재	만수동 956-3	
55	도근점	1117	439559.14	175807.62	2005.7.20	철재	만수동 892-7	
56	도근점	1151	439794.07	175740.84	2005.7.20	철재	만수동 864-12	
57	도근점	1257	440088	175211.09	2005.7.20	철재	간석동 918-9	
58	도근점	1258	440091.86	175153.72	2005.7.20	철재	간석동 916-3	
59	도근점	1259	440015.63	175141.95	2005.7.20	철재	간석동 916-24	
60	도근점	1260	440026.69	175120.27	2005.7.20	철재	간석동 916-15	
61	도근점	1262	439980.34	175086.65	2005.7.20	철재	간석동 912-7	
62	도근점	1300	439974.48	175193.22	2005.7.20	철재	간석동 919-20	
63	도근점	1301	440029.89	175201.67	2005.7.20	철재	간석동 919-9	
64	도근점	1378	438593.8	172907.31	2005.7.20	철재	구월동 1343-9	

일련번호	기준점명칭	기준점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		설치일자	표지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65	도근점	1379	438565.62	172904.88	2005.7.20	철재	구월동 1358-2	
66	도근점	1410	438595.95	173296.51	2005.7.20	철재	구월동 1347-4	
67	도근점	1423	438605.08	173205.89	2005.7.20	철재	구월동 1351-5	
68	도근점	1471	438431.57	172922.67	2005.7.20	철재	구월동 1381-9	
69	도근점	1533	438431.65	173444.62	2005.7.20	철재	구월동 1455	
70	도근점	1550	438319.96	173508.52	2005.7.20	철재	구월동 1455	
71	도근점	1551	438322.09	173431.46	2005.7.20	철재	구월동 1456	
72	도근점	1565	437993.42	173646.18	2005.7.20	철재	구월동 1174-4	
73	도근점	1628	438634.85	173300.51	2005.7.20	철재	구월동 1123-11	
74	도근점	1629	439000.27	176530.77	2005.7.20	철재	만수동 961-4	
75	도근점	1718	437396.93	176743.94	2005.7.20	철재	만수동 1070	
76	도근점	1719	437445.83	176812.8	2005.7.20	철재	만수동 1070	
77	도근점	1720	437515.63	176813.98	2005.7.20	철재	만수동 1070	
78	도근점	1735	438214.75	177089	2005.7.20	철재	만수동 1097-7	
79	도근점	1751	437525.38	176454.94	2005.7.20	철재	만수동 1069	
80	도근점	1752	437309.75	176634.5	2005.7.20	철재	만수동 1070	
81	도근점	1753	437278.37	176589.43	2005.7.20	철재	만수동 1070	
82	도근점	1754	437401.38	176536.09	2005.7.20	철재	만수동 1049-7	
83	도근점	1805	438497.95	176575.17	2005.7.20	철재	만수동 1072-8	
84	도근점	1817	438482.47	176359.86	2005.7.20	철재	만수동 1074	
85	도근점	1828	438322.66	176607.6	2005.7.20	철재	만수동 1081-2	
86	도근점	1829	438342.61	176621.74	2005.7.20	철재	만수동 1085-5	

일련번호	기준점명칭	기준점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		설치일자	표지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87	도근점	1896	438122.08	176696.99	2005.7.20	철재	만수동 1016-3	
88	도근점	1897	438005.48	176696.91	2005.7.20	철재	만수동 1019-2	
89	도근점	1933	438630.42	173343.97	2005.7.20	철재	구월동 1123-6	
90	도근점	2129	378.14	-13294.58	2005.7.20	철재	남촌동 330-3	
91	도근점	2209	435180.77	173272.33	2005.7.20	철재	남촌동 619-7	
92	도근점	2213	435412.61	173466.69	2005.7.20	철재	남촌동 618-3	
93	도근점	2265	434479.26	173823.82	2005.7.20	철재	남촌동 625-10	
94	도근점	2295	434554.68	173711.36	2005.7.20	철재	논현동 434	
95	도근점	2301	434968.64	173294.99	2005.7.20	철재	남촌동 620-4	
96	도근점	2322	435147.2	173874.69	2005.7.20	철재	남촌동 614-3	
97	도근점	2324	435224.99	173744.2	2005.7.20	철재	남촌동 615-3	
98	도근점	2329	435204.28	173487.5	2005.7.20	철재	남촌동 619-5	
99	도근점	2340	434247.31	173978.94	2005.7.20	철재	논현동 436-4	
100	도근점	2366	434296.82	172623.29	2005.7.20	철재	논현동 451-7	
101	도근점	2371	434570.05	172832.31	2005.7.20	철재	논현동 428-8	
102	도근점	2377	434268.74	172910.31	2005.7.20	철재	논현동 446-8	
103	도근점	2388	434503.51	173489.57	2005.7.20	철재	논현동 433-14	
104	도근점	2390	434374.57	173412.94	2005.7.20	철재	논현동 433-12	
105	도근점	2395	434528.09	173154.62	2005.7.20	철재	논현동 429-1	
106	도근점	2414	434632.66	173566.07	2005.7.20	철재	남촌동 624-7	
107	도근점	2419	434127.58	173001.49	2005.7.20	철재	논현동 447	
108	도근점	2454	434066.09	173869.43	2005.7.20	철재	논현동 439-3	

일련번호	기준점명칭	기준점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		설치일자	표지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109	도근점	2463	433887.86	173280.62	2005.7.20	철재	논현동 445	
110	도근점	2470	433749.88	173368.23	2005.7.20	철재	논현동 444-5	
111	도근점	2476	434837.66	173206.12	2005.7.20	철재	남촌동 621-12	
112	도근점	2504	433626.27	173672.31	2005.7.20	철재	논현동 550-3	
113	도근점	2506	433791.58	173741.49	2005.7.20	철재	논현동 442-1	
114	도근점	2540	434762.53	173993.63	2005.7.20	철재	남촌동 627	
115	도근점	2542	434672.35	173939.95	2005.7.20	철재	남촌동 625-5	
116	도근점	2614	433888.25	172949.68	2005.7.20	철재	남촌동 633-2	
117	도근점	2617	434005.35	172753.53	2005.7.20	철재	남촌동 633	
118	도근점	3026	433888.98	172860.36	2005.7.20	철재	남촌동 632-6	
119	도근점	3262	435004.59	175799.89	2005.7.20	철재	도림동 358-20	
120	도근점	3263	435076.08	175864.08	2005.7.20	철재	도림동 297	
121	도근점	3264	435155.21	175912.14	2005.7.20	철재	도림동 284-4	
122	도근점	3265	435224.08	175966.37	2005.7.20	철재	도림동 286-2	
123	도근점	3266	435305.95	176030.08	2005.7.20	철재	도림동 258-1	
124	도근점	3267	435344.62	176086.87	2005.7.20	철재	도림동 247-7	
125	도근점	3268	435400.41	176131.89	2005.7.20	철재	도림동 190-14	